

동 지침은 가이드 라인으로서 해당 부처·기관·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
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「코로나19(COVID-19)」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

사업장 대응 지침

(9판)

2021. 02. 19.

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
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산재예방보상정책국
산업보건과



목 차



- I. 코로나19 개요1
 - 1. 정의1
 - 2. 임상적 특성1
 - 3. 진단2
 - 4. 치료2
 - 5. 예방2
- II. 코로나19 대응 방안4
 - 1. 목적4
 - 2. 기본방향4
 - 3.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5
 - 가.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5
 - 나.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6
 - 다. 회의·교육 및 모임·회식, 출장 등6
 - 라.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9
 - 마.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2
 - 바. 위생 및 청결·소독 등15
- III. 추가 안내 사항17
 - 가. 휴가 및 휴업 관리17
 - 나. 유연근무제 활용18
 - 다. 가족돌봄 휴가18

1 정의

- '20.2.11 WHO에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novel corona virus disease)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-2019(약어 COVID-19)로 정함
- ※ '20.2.12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로 명명

2 임상적 특성

- 주요증상: 발열(37.5℃ 이상)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·미각소실 등이 있으며,
 - 그 외에 피로, 식욕감소, 가래, 소화기증상(오심, 구토, 설사 등), 혼돈, 어지러움, 콧물이나 코막힘, 객혈, 흉통, 결막염 등 다양함
- 잠복기: 1~14일(평균 5~7일)
- 전파경로: 주로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말을 할 때, 재채기·기침할 때 생성되는 침방울을 통해 사람간 전파(비말감염)
 -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침방울(비말)이 묻은 손이나 매개체와 접촉하고 눈, 코 또는 입을 만져 감염(접촉감염)
- 세계 치명률: 2.16%(WHO, '21.1.25. 기준), 우리나라: 1.81%('21.1.26. 기준)
- 중증으로 진행되는 위험 요인: ①65세 이상, ②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, ③심혈관계 질환, 당뇨병, 고혈압, 만성 신질환 및 간질환, 면역억제자 등 기저질환 ④암, ⑤비만, ⑥장기 이식, ⑦흡연

3 진단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전자(PCR) 검사, 바이러스 분리

4 치료

- 현재 코로나19 특이 치료제는 없으며 증상에 따른 해열제, 수액공급, 전해질 등 대증 치료
-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일부 확인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나라에서 긴급 승인이 되었거나, 긴급 승인을 준비 중임
-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치료

5 예방

-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
 -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
 - 기침,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
 -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
 - 씻지 않은 손으로 눈, 코, 입을 만지지 않기
 - 발열, 호흡기 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와 접촉 피하기
 -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

- 임산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하기
 - 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, 신부전, 암환자 등
 -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나타나면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하기
 - *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3~4일 경과 관찰 증상이 심해지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,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하고 마스크 착용
-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출장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해외로 출장하는 경우 아래 예방 수칙을 준수
-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
 -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
 -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
 - 발열, 호흡기 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와 접촉 피하기
 - 귀국 후 발열, 호흡기 증상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 상담

1 목 적

- 본 지침은 사업장 내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.

2 기본 방향

-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,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하고 대비·대응계획(사내 협력업체 포함)을 수립한다.

-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고,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*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보호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비치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.

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,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포함

-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의심 등 감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.

- 사업장의 경영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(격리대상자 포함)가 발생하면 즉시 격리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조치한다.

- 보건관리자(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)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.

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

가.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 체계 마련

전담조직 구성

- 사업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(방역관리자)를 지정한다.
- 방역관리자는 「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·중앙사고수습본부)」에 따라
 - 사업장 위험도평가를 하고, 이에 따른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‘맞춤형 코로나19 방역지침*’을 마련하여 실시 후 점검한다.
- *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(협력업체, 파견·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를 포함하여 수립
-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, 보건소·의료기관(선별진료소, 이송병원 등)과 비상연락체계 구축한다

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

- 코로나19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·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‘업무 지속계획*’을 수립한다.
- *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(협력업체, 파견·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)를 포함하여 수립
- 확진환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결근*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.
-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,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.
- * 본인감염, 환자간호,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

나.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

유연근무 · 휴가 등

○ 유연근무제(재택근무, 시차출퇴근 등), 휴가제도(가족돌봄휴가, 연차휴가, 병가 등)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.

-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한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, 휴가제도(연차휴가, 병가, 가족돌봄휴가 등)를 적극 활용한다.

※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, 휴가 등 적극 활용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기관·부서별 적정비율로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기관·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		인원의 1/3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	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 화

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

* 공공기관은 소관 부처·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별도 방역지침 수립하여 시행 가능

-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*은 방역수칙** 준수한다.

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등 **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

- 콜센터 등은 상담건수, 응답률 등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·인사 등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한다.

다. 회의·교육 및 모임·회식, 출장 등

회의 및 워크숍, 교육, 연수

○ 온라인 또는 영상*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하게 대면으로 실시할 경우 방역수칙**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한다.

* 회의의 경우 영상회의 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 활용

** 발열(37.5°C이상) 확인, 마스크 착용,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,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
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>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		100인 미만 집합	50인 미만 집합	10인 미만 집합

소규모 모임, 사내 동아리 활동, 취미모임, 회식

○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기준에 따라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한다.

<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>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- 500명 이상 참여시,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-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·협의 - 비필수적인 회식은 1.5단계에서는 소규모(100인 미만)으로 실시		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	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	1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*

※ 정기 주주총회, 임금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예외 허용

출장

○ 최소한으로 실시하되,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업무상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기 또는 취소한다.

-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및 기침예절 준수한다.

○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발령하는 여행경보지침을 따르고, 여행경보 발령국가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·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.

[외교부 '특별여행주의보' 발령 현황]

외교부 2021.02.15.기준

해당 국가	행동요령	기간
전 국가·지역 * 여행경보 3,4단계 지역은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 없음	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	'21.02.15(월)~'21.3.17(수) * 3.23. 최초 발령에 이은 4차 발령

※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

- 1단계(남색경보, 여행유의): (체류자)신변안전유의, (여행예정자)여행유의
- 2단계(황색경보, 여행자제): (체류자)신변안전 특별유의, (여행예정자)여행필요성 신중 검토
- 3단계(적색경보, 철수유의): (체류자)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, (여행예정자)여행 취소·연기
- 4단계(흑색경보, 여행금지): (체류자)즉시 대피·철수, (여행예정자)여행 금지

※ 참고: 외교부 해외안전여행(www.0404.go.kr) - 해외안전정보 - 최신안전소식

- 출장·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“개인위생수칙 및 다중 밀집 장소 방문 시 등 유의사항 준수, 해외에서 주의사항, 귀국 후 유의사항 등”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.

*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 국가·지역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(외교부, 3.23)된 상황으로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행동요령 준수

-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능동감시, 전수검사 (모든 입국자에 대해 1일 이내 실시) 등에 적극 협조한다.

※ 중요한 사업상 목적 등으로 격리 면제가 필요한 경우 「해외입국자 격리면 제서 발급」 활용(산업통상자원부 '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'(☎ 1566-8110)에서 일괄 접수 및 관련 절차 안내)

-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.

- 특히,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국내 입국 후 2주일간 자가격리하여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한다.

라.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

발열 · 호흡기증상 모니터링
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및 방문자의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한다.
- 발열여부를 스크리닝 하기 위해 비접촉식 체온계, 열감지(열화상)카메라 등을 활용하고,
- 개인별 정확한 체온의 측정·관리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인증*을 받은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체온을 측정한다.

* 의료기기 인증 여부 확인: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(<http://emed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제품정보방 →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검색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체온 및 호흡기 증상 확인 주기 >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매일	1일 2회 이상		1일 2회 이상 * 필요 시 검사결과 기록	

◆ 마스크 착용(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지침 발체, '20.11.27)

<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>

-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
- 실외에서는 ①집회 · 공연 ·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(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),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

<상황별 권고 마스크>

상황	보건용 마스크		수술용 마스크	비말차단용 마스크
	KF94	KF80		
의료관상 상황	·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경우	필수	-	-
	·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·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	(우선) 권장		권장
생활속 상황	· 타인 접촉이 잦은 직업군 ·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·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		권장 *밀폐, 밀집, 많은 대화로 비말생성 우려가 높은 경우 보건용마스크 우선 권장	

○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는 체온을 측정 할 때 KF80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,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*하여 체온을 측정한다.

* 만일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이 의심되었을 경우 측정 후 손소독 또는 손씻기를 실시한다.

- 접촉식 체온계를 활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경우, 체온 측정 전·후 손소독을 실시하고 체온을 측정한다.

* 체온 측정 대상자와 접촉한 체온계의 접촉부위를 알코올 솜 등을 통한 소독 또는 커버 등의 교환을 통해 올바른 체온계측정 방법에 따라 주의하여 측정한다

사업장 내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발생 시

○ 출근 전 발열(37.5℃ 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, 병가·연차휴가·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한다.

* 회사 사규(취업규칙 등)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,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,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

○ 근무 중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알리도록 하고,

-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를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*를 착용하고, 사업장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노동자를 별도 격리 장소**로 이동하는 등 다른 노동자와 분리하고

* 해당 노동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

**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보건당국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

-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.

- 이 경우 보건당국의 특별한 조치사항이 없다면, 해당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즉시 귀가하고 발열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한다.

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

- 출근 전 확진환자*로 확인된 노동자는 출근하지 않고 유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 병원 또는 자가 격리 등 조치에 따른다.

*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기준에 따라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

-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발생 또는 방문한 경우*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**에게 발생·방문 사실을 즉시 알리고, 관련 정보의 고지가 필요한 경우 내용,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, 방문한 고객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경우를 말함.

** 협력업체 노동자, 파견·용역 노동자 및 배달종사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

- 사업주는 보건당국의 확진환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.
- 사업주는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의 조치 명령을 적극 이행한다.
- 확진환자가 이용한 공간은 “중앙방역대책본부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(붙임6)” 지침*에 따라 사업장을 소독한다. 소독 후 사용 재개는 같은 지침에 따라 사용된 소독제 종류별 특성 및 소독한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.

*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, 시설 사용 재개 시점은 소독제별로 특성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제품별 주의사항 고려(지침 부록1 참고)

- 사업장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개인보호구(마스크, 일회용장갑 등)를 착용하고 별도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
 -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, 지역번호+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고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다.
- 사업장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, 동일 장소 등에 2~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~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,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.

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

-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 복귀관련하여 보수·휴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한다.
- 사업주는 감염된 동료들 낙인하지 않도록 문화를 조성하여 회복 후 사업장에 복귀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지원한다.

※ 코로나19 관련 정신과적 지원기관: 정신건강센터, 근로자건강센터, 직업트라우마센터 등

마.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·휴게실 관리

-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, 사무실 내 유힬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한다.
- 책상간 간격, 노동자 간 간격을 2m(최소 1m) 이상 유지하되,
 - 간격 조절이 어려운 경우 모니터·컴퓨터·책상·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힬공간을 활용한다.
-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(콜센터 등)은 노동자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한다.

사무공간

- 책상, 의자, 사무기기(마우스, 키보드 등), 문손잡이, 스위치(버튼), 난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.
- 작업장, 사무실, 휴게실, 화장실, 출입구, 엘리베이터, 복도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을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을 한다.
- * 자세한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집단시설·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(3-4판) (붙임7) 참조

기숙사·휴게실 등

-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및 실내 휴게실 등이 있는 경우 가구 및 비품, 침구·수건 등을 청소, 소독 및 세탁을 통해 청결히 관리한다.
- 기숙사의 공용 공간(조리실, 세탁실, 화장실 등)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하고,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안내하고 손이 자주 닿는 표면*을 주기적으로 소독한다.
- * 출입문 손잡이, 계단 난간, 스위치, 세탁기 표면, 가스레인지 손잡이, 책상, 의자 등
- 실내 휴게실, 탈의실, 흡연실,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,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한다.
- * 휴게실 등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 등을 같이 먹지 않기, 흡연실에서 흡연자 간 2m이상 거리를 두고 가급적 대화 자제하기 등
- 2.5단계부터는 실내 휴게실 등 이용 시 대화 금지한다.

구내식당

- 구내식당은 투명 가림막 설치 또는 가급적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식탁을 배치하고, 개인 간 거리 유지,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한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부터는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한다
- 2.5단계부터는 식사 시 대화 금지한다.
- 점심시간 몰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영* 활용한다.
- * 예시) 부서별로 달리 운영(A부: 11:30~12:30, B부: 12:30~13:30)

통근버스

-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, 통근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.
-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에 따라 탑승자 기록, 음식물 섭취 금지, 한자리 띄어 앉기 등을 준수한다.

<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기준 >

1단계	1.5단계	2단계	2.5단계	3단계
차량 소독(매일), 탑승자는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	1단계 + 탑승자 기록	1.5단계 + 음식물 섭취 금지		2.5단계 + 한자리 띄어 앉기

바. 위생 및 청결·소독 등

방역 준비

- 개인용 청소·소독용품을 지급 또는 비치하고, 마스크 및 위생 용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·비치하거나 구입 지원한다.
 - 보호구(마스크)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물품을 충분히 준비한다.
 -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정제(비누 등) 또는 손 소독제, 종이 타월이나 화장지, 소독용 세제, 체온계 등 물품을 충분히 준비 및 비치한다.

방역 교육·안내

- 노동자가 손씻기·손소독, 기침예절 준수, 개인용 컵·식기·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하도록 안내한다.
 -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.
 - 신체접촉(악수, 포옹 등)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(구호외치기 등)는 자제하며,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금지한다.
- 노동자 및 고객(방문객)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.
 - 사업장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및 고객(방문객)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(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등)을 홍보한다.
 - 사업장, 영업소 등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.

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cdc.go.kr) 자료 등을 활용

방역 관리

- 기본적으로 실내 전체 및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하되,
 -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부터는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한다.
- 사무실, 작업장,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, 매일 2회 이상 환기한다.
- 의료기관*, 항공사, 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**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,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
 - * 청소, 세탁, 돌봄서비스종사자(간병인, 요양보호사 등),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
 - **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골프장캐디, 설치수리기사 등 포함
 -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*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,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하거나 상황에 맞게 위생용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.
 - *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,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소독제(알코올 손소독제)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
- 배송 및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배송·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손소독제 및 마스크 등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.
-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업장 상황에 맞게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 외에서 응대한다.

가. 휴가 및 휴업 관리

- 「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」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·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* 또는 생활지원비**를 지원하고 있으며,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.

구분	유급휴가비*	생활지원비**
지원대상	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	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*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
지원수준	개인별 일급 기준 (1일 13만원 상한)	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(4인 가구 127만원)
신청처	국민연금공단 지사	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(또는 읍면동)

※ 지원제외 대상: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, 4월 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(내·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)
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른 입원·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,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*을 지급하여야 한다.

*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,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 이상(평균임금의 70%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) 수당 지급필요
(단,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)

- 또한, 사업장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휴가*,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
* ①단체협약·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,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부여 등 (근로자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 등은 불가)

나. 유연근무제 활용

◆ 유연근무제 주요내용

- (시차출퇴근제)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
- (재택근무제)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
- (원격근무제) 주거지,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

-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집접촉 등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차출퇴근제*, 원격·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한다.

* 예시) 10시 출근/19시 퇴근, 8시 출근/17시 퇴근

- 특히,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가급적 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- 다만, 시차출퇴근제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, 시간, 인원을 분배하여 운영한다.

다. 가족돌봄 휴가

- 노동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.

* 사업주는 노동자의 신청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3제2항에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음

※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 가능